



2015 제3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제29권 제3호)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Behavior and Suggestions for Countermeasures

김 잔 디*

차 례

I. 서 론	IV. 스토킹 행위의 규제방안에 관한 제언
II. 스토킹 피해의 실태	V. 결 론
III. 스토킹 실태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국 문 요 약

과거 스토킹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정치가 등 저명한 사람에게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스토킹 피해는 유명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러던 중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경미한 처벌이지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스토킹 행위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처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스토킹 행위 처벌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범죄 등에

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원인이나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토킹 피해에 관련된 통계를 분석하여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통계분석결과로부터 스토킹 행위의 특징 및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책상의 난점에 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만일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스토킹에 대한 대응 실태를 검토하고, 현재의 대응체제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대책에 관한 제언을 하겠다.

* 일본 오사카대학교 초빙연구원

I. 서론

과거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외국어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지 않았지만 최근 스토킹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스토킹 개별적 행위태양을 평가하였을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라도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행해질 경우 상대방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점차 적극적 타해행위로 발전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로 발전된 후에 비로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3년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처벌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처럼 스토킹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동법에 의한 처벌은 가벼운 범칙금에 그치고 있어 과연 이러한 처벌이 스토킹 행위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스토킹 행위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그 특징에 관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한 지원상의 난점에 대해 검토한 후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으로 이러한 난점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

고자 한다.

스토킹 피해가 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의 발생실태와 비교법적 검토(곽영길·임유석·송상욱, 2011; 김성룡, 2007; 김은경, 2003;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이창무, 2014; 정완, 2000) 및 스토킹 관련 특례법의 입법(김현아, 2015; 박선영, 2014; 박찬걸, 2012; 이원상, 2013; 장정범·이상철, 2014)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스토킹 처벌의 문제점 및 규제방안(김정하, 2013; 이건호, 2007, 이성대, 2014)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문들에서는 스토킹의 개념 및 특징, 스토킹의 유형 및 원인 등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로부터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외국의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하는 연구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왜 스토킹을 형법 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동 행위가 다른 범죄행위와 어떠한 점이 다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 특징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징 및 심리상태, 스토킹 행위의 유형¹⁾ 등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즉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뿐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 행위의 특징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되고 있지 않다. 그 외에도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도 다수 찾아볼 수 있는

1) 스토킹의 유형으로는 단순집약형, 예정집착형, 예정망상형, 왜곡된 피해망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건호·김은경·황지태, 스토킹 피해실태 및 입법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장규원,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법학연구 제17권,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00.

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스토킹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유익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동 연구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가지는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는 것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학자 및 실무가는 스토킹 행위 규제를 위하여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하고 있고 그 이유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고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심각화 경향이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연구들은 그 근거를 외국문헌 등에서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스토킹 관련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목적, 내용, 법적효과 등에 관한 논의에 앞서 스토킹 행위는 어떠한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원상의 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행의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왜 바람직하지 못하며 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소 오래되거나 규모가 크지 않다는 난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동 행위의 특징을 파악하고, 관련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을 일반 범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검토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으로 하겠다.

II. 스토킹 피해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가 몇 건인지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스토킹 피해 건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우선 스토킹 행위와 개념과 태양이 유사한 지속적 괴롭힘 처리건수를 참고하여 스토킹 피해 건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신설하였고, 경찰청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 괴롭힘 처리 건수는 2013년 총 312건(통고처분 254건, 즉결심판 58건²⁾)이며 2014년 총297건(통고처분 249건, 즉결심판 48건)이었다.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2013년 3월 22일에 신설되었으므로 2013년 건수에는 1월~3월까지의 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 9개월간의 처리건수를 나타내므로 이것을 환산하여 계산하면 2013년 추정 발생건수는 416건이고, 2013년과 2014년의 지속적 괴롭힘 처리건수의 평균은 356.5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성범죄 피해 상담 건수 중 스토킹의 비율³⁾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43	26	49	37	50
비율	3.3	2.3	3.7	2.6	3.4

2)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2014, 63쪽·97쪽 참고.

3) 〈표 1〉은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 2011, 8쪽;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2, 3쪽;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 건수를 추정해보도록 하겠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 중 스토킹에 관한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전체 성범죄 피해 상담건수 중 50건, 4% 이하로 높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폭력 상담건수 중 스토킹 행위에 관한 상담건수는 평균 3.06%이고, 2013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26,919건⁴⁾이므로 2013년 스토킹 행위의 발생건수는 824건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2000년에 시행된 조사에 의하면 생애동안 원치 않는 접촉을 경험하는 비율은 15.8%(남성 10.5%, 여성 20.9%)이고, 지난 1년 동안 원치 않는 접촉을 경험한 경우는 5.4%(남성 4.2%, 여성 6.6%)였다. 2000년에 1회에 그친 조사였지만 1년 동안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 유형, 지속기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스토킹의 실태에 대한 전국규모의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는 50건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스토킹 피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된다.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는 90%이상 아는 사람

및 상담 동향분석, 2013, 6쪽;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4, 4쪽;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5, 4쪽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4) 법무연수원, 2014 범죄백서, 2014, 64쪽.

5) 김은경,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6쪽.

이고, 그 중에서도 이전에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 가해자의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자의 가해자 중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약 60%,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약 40%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교 선후배, 헤어진 애인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⁶⁾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⁷⁾ 즉 스토킹은 주로 성인 아는 사람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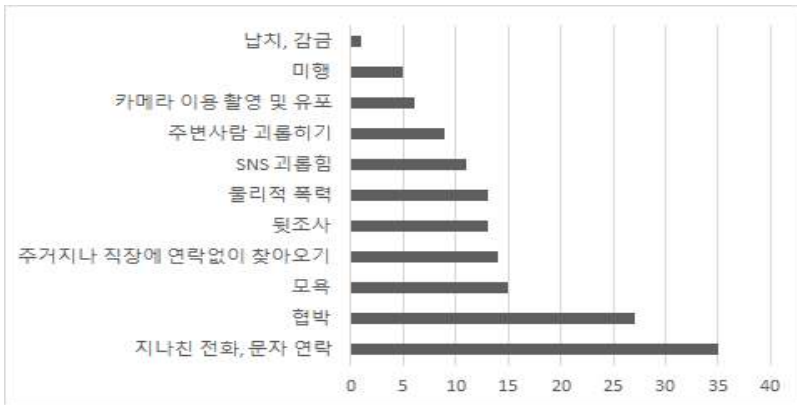
〈표 2〉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⁸⁾

(단위 : 건(%))

유형	아는 사람(90.0)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고객	전 데이트상대	현 데이트상대	동네 사람	학교	주변인의 지인	지인	한번 만난사람			
	4 (8.0)	29 (58.0)	1 (2.0)	1 (2.0)	5 (12.0)	1 (2.0)	3 (6.0)	1 (2.0)			
성인 (20세 이상)	4 (8.7)	28 (60.9)	1 (2.2)	1 (2.2)	1 (50.0)	1 (2.2)	3 (6.5)	1 (2.2)	1 (2.2)	1 (4.4)	45 (100)
청소년 (14세~19세)	0 (0.0)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미상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2 (66.7)	3 (100)

- 6)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2013 성폭력 실태조사”, 2014, 136쪽.
- 7) 일본의 도도부현이 경찰이 2014년에 발생한 22408건의 스토킹 범죄의 분석결과를 보면 피해자·가해자의 관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교체상대로 약 51%(11641건)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인 11%(2593건), 직장관계 10%(2367건), 배우자 9%(1959건) 등이 뒤를 잇고 있었다. 平成26年の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等の対応状況について, 警察廳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 2015, 3쪽.
- 8) 〈표 2〉는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 2015, 6쪽,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재구성 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1〉 스토킹 가해 행위 유형과 양상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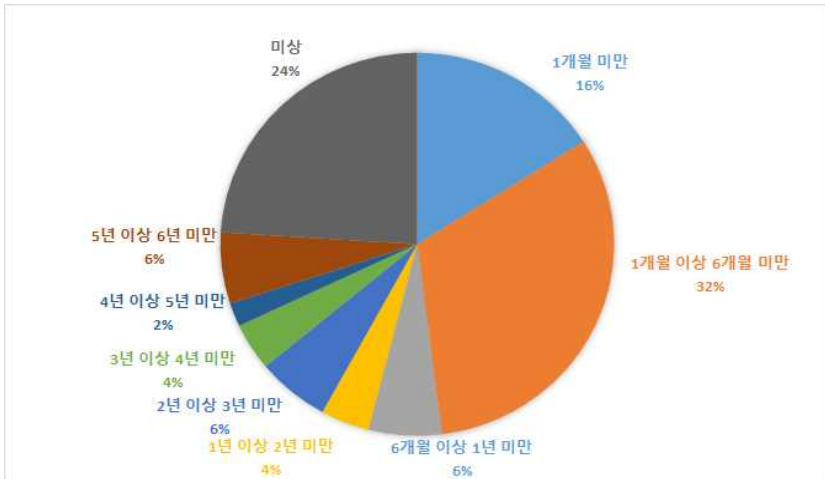
〈그림 1〉은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험자들이 호소한 피해를 중복하여 표기한 통계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나친 전화, 문자 연락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협박, 모욕, 주거지나 직장에 연락 없이 찾아오기, 뒷조사, 물리적 폭력 등이 뒤를 잇고 있었다. 스토킹 행위의 태양은 전화, 문자, SNS부터 시작하여 다소 소극적인 미행, 뒷조사 그리고 협박, 물리적 폭력, 납치, 감금 등 형법에 저촉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이 중에서 주변사람 괴롭히기, 주거지나 직장에 연락 없이 찾아오기, 모욕, 협박 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아는 정보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그 피해가 자신에 그치지

9)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5, 9쪽.

10) 일본 스토킹 행위 태양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행·기다리기, 면접·교제의 요구, 무언전화·계속전화·메일, 난폭한 언동,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행위, 명예를 해하는 행위의 순으로 나타났다(平成26年の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等の対応状況について, 警察廳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畫課, 2015, 4쪽).

않고 주변사람이나 가족에게까지 미쳐 피해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 SNS를 통한 괴롭힘은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사칭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다 위축시킨다고 한다.¹¹⁾ 그리고 전화, 문자, SNS, 연락 없이 찾아오기 등의 행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2〉 스톱킹 피해 지속기간¹²⁾



11)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보고서, 8쪽.

12)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5, 10쪽.

〈그림 2〉는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전화하기 전까지 스토킹 피해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모두 합하면 28%로 미상을 제외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조사는 많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스토킹 행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1년 이상 장기화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의 2013년 조사에서도 스토킹 피해의 반복성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59명을 대상으로 피해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회에 그친 경우가 33.3%, 2회 이상 반복된 경우가 66.7%를 차지하였다¹³⁾. 이처럼 피해자의 대부분이 2회 이상의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재 입수 가능한 통계 자료를 통하여 스토킹 행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이하와 같다. 첫째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고, 성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전화, 문자 등 소극적인 형태에서 협박, 물리적 폭력, 납치, 감금 등 적극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스토킹 행위는 단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스토킹 행위는 다른 범죄와 다른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13)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137쪽.

14) 김운희, 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2008, 31쪽.

Ⅲ. 스토킹 실태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스토킹 행위의 특징

스토킹 행위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징은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입체적인 처벌이 가능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⁵⁾ 단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되거나 스토킹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으로 처벌되는 등 평면적인 처벌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와 같은 제재로 스토킹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이번 장에서는 위의 통계자료 검토를 통해 밝힌 스토킹 행위의 특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15) 동 법에 의하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법에서는 스토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경찰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관련규정 미비로 인해 처벌이 어려웠던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볼 수 있다(김정하, “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9권 제4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440쪽).

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친밀성)

스토킹은 많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다는 특징이 있다.¹⁶⁾ 앞에서 살펴본 2014년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데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60% 정도였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도 교제상대 혹은 배우자에 의한 스톱킹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교제상대 혹은 배우자 등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과 상충되어 스톱킹행위에 대한 개입 시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스톱킹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경찰이다. 하지만 경찰권의 발동은 과거 경찰권 확대라는 폐해의 경험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찰공공의 원칙(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이다. 경찰공공의 원칙은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경찰권의 남용을 경계하는 의미의 원칙이다. 경찰권 남용에 대한 한계 논리를 반대로 해석하자면 국민의 사생활 내지 민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민의 사생활 내지 민사관계도 많은 경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행해진

16) 스톱킹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호의감정 및 호의감정을 받아주지 않은 원한 감정 등 호의적인 감정에 기인 한 것이 전체의 97.3%를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호의적인 감정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64.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스톱킹의 원인은 주로 호의적인 감정에서 시작되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왜곡되어 분노나 보복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곽영길·임유석·송상욱,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66쪽 이하).

다는 이유로 개입이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는 경찰작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으로 사적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¹⁸⁾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또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가정폭력과 더불어 스톱킹도 이러한 범죄 유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스톱킹 행위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¹⁹⁾

경찰이 스톱킹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기피하는 것이 경찰공공의 원칙,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개입하는 정도와 스톱킹의 경우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톱킹은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 경우 경찰권을 발동시켜 스톱킹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17) 박용광, “경찰권의 민사관계불간섭 원칙에 관한 소고-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264쪽 이하.

18) 박정훈·정조영,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경찰공공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01, 5쪽 이하.

19) 2012년에 발생한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에 이어 2015년 7월 27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톱킹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의 적절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는 <http://news.joins.com/article/18346763> 참조 (2015. 11. 1 검색).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행위의 반복적 성향

스토킹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관계로부터 일정한 감정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상대에게 집착하는 등 스톱킹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 행위는 ①행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²⁰⁾ ②물리적으로 스톱킹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스톱킹 행위는 장기간 반복된다. 즉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1/3 정도가 6개월 이상 스톱킹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스톱킹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가 66.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범죄의 경우 특별한 원한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일 인물에 대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톱킹 행위는 동일인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새로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²¹⁾ 적절한 초기대응은 피해가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자 보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3) 행위의 악화

20) 박웅광, “경찰임무의 재구성 과 경찰개입청구권”, 법학연구 제57호, 한국법학회, 2015, 105쪽.

21) 박선영,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톱킹. 스톱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2014 연구보고서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쪽 이하.

스토킹 행위의 반복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서 점차 심각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²²⁾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톱킹으로 시작하여 살해에 이르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²³⁾ 많은 스톱킹 사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특징인이 보통 소재하는 장소에서 지켜보기, 전화·이메일 보내기 등에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적극적인 침해 행위 예를 들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으로 발전되어 결국 상해, 살인 등의 흉악 범죄로 이르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²⁵⁾ 스톱킹 행위는 동일인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정도가 점차 심각화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적절한 초기대응은 피해의 반복, 심각화를 방지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4) 잠재화 경향

- 22) 이창한,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95쪽.
- 23) 구체적으로 1998. 5. 26. 대판 98다11635, 2008. 10. 9. 대판 2007다40031 등이 있다.
- 24) 藤田尙, “ストーカー犯罪の實態と將來の問題—ストーカ規制法成立後の現状と問題点について”, 大學院研究年報 第36号, 中央大學, 2007, 203쪽 이하.
- 25) 스톱킹의 진행 단계를 도식화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체적인 발전 과정은 이하와 같다. 스톱커는 처음에 미행, 협박, 편지, 전화, 선물 등 간접적인 방법을 시도하지만, 차츰 방문, 협박, 감시, 밀착 미행, 폭행, 살인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과정은 구애→위협→폭력→해결 혹은 포기 등의 네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시형, 스톱킹, 애정결핍 혹은 과잉보호가 낳은 망면, 월간조선 제215호, 1999, 14쪽(이건호·김은경·황지태, 스톱킹 피해실태 및 입법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3쪽에서 재인용).

스토킹 피해는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잠재화 되는 경향이 있다.²⁶⁾ 스톱킹 피해자 잠재화 되는 이유는 피해자 심리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스톱킹 피해자는 첫째 스톱킹을 당하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피해나 불이익이 두려워 부인하려고 함, 둘째 타인이 자신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인해 스톱커를 자극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스톱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함, 셋째 피해자들은 협박을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옛 애인에 의해 스톱킹을 당할 때 죄책감을 느낌, 넷째 스톱커의 위협이 가해질 때 거부감과 죄의식으로 인한 감정의 혼란으로 스톱커와 협상하거나 체념함 등의 특징이 있다.²⁷⁾ 만일 자신이 폭행, 상해, 절도,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 없이 외부기관에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스톱킹 피해자는 이와 같은 심리로 경찰이나 상담소 등에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스톱킹 행위는 메일, 전화, 협박, 기다리기 등 피해자와 가해자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피해의 현재화(顯在化)되기 어려운 것이다.

2. 규제상의 난점 및 현행규정의 문제점

1) 스톱킹 행위 규제상의 난점

이상에서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본 스톱킹 행위의 특징은 가해자의 스톱킹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효율적인

26) 박선영, 앞의 보고서, 2쪽 이하.

27) 김용준, 범죄피해자학, 백산출판사, 2009, 200쪽 이하.

방안을 세우는데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①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친밀성 ②행위의 반복·심각화 ③피해의 잠재화 경향 이 세 가지 특징이 스톱킹 행위에 관한 유효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경찰 등 공적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일 전혀 모르는 사람과 과거 연인 혹은 직장 동료 등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전자는 바로 경찰 등에 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후자는 경찰 등의 강압적인 수단 선택하기보다는 불편함·피해를 참는 등 보다 소극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스톱킹 피해자 심리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⁸⁾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피해가 잠재화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스톱킹 행위는 초기에 조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가해자는 특정환자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위해 또 다른 행동을 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톱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반복에 그치지 않고 점차 심각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후적 대응보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스톱킹 행위에 대해

28) 김용준, 위의 책, 200쪽.

적절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다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스토킹 행위 건수가 0이 되도록 모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재발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를 발견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중대한 장해를 발생하게 방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련기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책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현행 법률은 그 특징을 고려한 규제를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하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스토킹 처벌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현재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토킹으로써 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의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지속적”, “계속적”, “반복” 등이 있다. 문언만으로 해석했을 때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속적이라는 단어는 대상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지속적은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토킹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스토킹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2회에 걸쳐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2년 후에 다시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 경우 스토킹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진다. “계속적”이라는 단어 역시 끊이지 않고 이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도중에 끊이지 않고 이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지속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속적·반복적이라는 단어는 대상의 범위를 제한시키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스톱킹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반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 행위와 다음 행위 사이에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하여도 반복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스톱킹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톱킹 관련 법안 입법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계속적과 같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반복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면 불명확성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여기서 경범죄(輕犯罪)라 함은 일반적으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되고 심각화 될 우려가 있는 스톱킹 행위를 단순히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로 평가해도 되는지 그리고 스톱킹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제하여 벌금 등의 처벌을 하는 것으로 동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스톱킹 행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자는 동법 제3조 제41호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보면 동조 동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자는 범칙금으로 8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장난전화, 자릿세 징수 등과 같은 금액이며, 거짓광고, 압표매매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물론 스토킹 행위의 태양 자체가 큰 침해 행위, 타해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지속적 괴롭힘이 압표 매매나 거짓광고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된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히 8만원의 범칙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피해가 반복적 성향이 있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자살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²⁹⁾ 개개의 행위 자체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장래 행위의 반복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범죄처벌법 외에 스토킹 행위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 협박, 폭행, 감금, 상해 등의 범죄로 발전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행위가 발견된 초기에 적절한 규제를 하였다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로 발전한 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스토킹 행위는 소극적인 행위로부터 시작되어 적극적인 타해 행위로 발전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개입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아직 이러한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스토킹 행위의 반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³⁰⁾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이나 범죄 등에 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 원인이나 특징 등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등 사전작업이

29)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형사정책연구원, 2013, 174쪽.

30) 이성대,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입방안-스토킹행위에 대한 개입방안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4, 121쪽 이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해지는 대응은 해당 행위의 근본적인 척결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스톱킹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과 형법도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스톱킹 행위 대책의 핵심은 행위의 반복 및 중대한 범죄로의 발전을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스톱킹행위의 반복과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범죄처벌법에 직접적인 스톱킹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 경미한 스톱킹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스톱킹 행위는 반복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칙금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스톱킹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형법 규정으로는 스톱킹 행위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 전에 개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스톱킹 행위에 대해 현행법 체계에서 개입하는 것은 행위의 재발의 방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면 새로운 형식의 처벌규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V. 스톱킹 행위의 규제방안에 관한 제언

스토킹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는 행위, 선물을 보내는 행위 등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미한 행동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화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한 스톱킹 행위의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우선 많은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듯이³¹⁾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스토킹 행위의 규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 등의 현행법으로는 스토킹 행위의 위협성을 고려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미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토킹을 자극하여 제2차 범행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³²⁾ 게다가 스토킹 행위는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고,³³⁾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이르러서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은 처음부터 상대에 대해 적극적인 침해 행위를 하기 보다는 거의 지켜보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행위로 시작되고, 이러한 행위는 점차 대담해져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스토킹 행위가 경미한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강력하고 유효한 대응을 해야 하며 현행의 경범죄처벌법·형법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

31) 스토킹 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현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이화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박선영,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이진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정현미, “여성폭력 과년 입법정책의 문제점”,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이화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32) 김현아, 앞의 논문, 119쪽.

33)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1, 148쪽.

하다고 하겠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고, 범죄로 발전하기 전의 행위 태양은 선물 보내기, 지켜보기,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으로 연락하기와 같이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스톱킹 피해의 방지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와 같은 개인적인 행동들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범죄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 두어야 국민에 대한 규제를 최소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적 괴롭힘의 조항을 참조하여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제재와는 별개의 경고, 범칙금 등의 처분을 하고, 동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반복된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반복성”의 해석과 기준 설정 시 같은 행위가 반복될 필요는 없고, “괴롭힘 행위”의 범주 안의 행위가 반복됨으로 족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의 연속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반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으로 피해의 잠재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외부에 상담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톱킹에 관한 사사로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 자체에 보다는 심각한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래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어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

여 스토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 외에도 의료기관이나 상담소 등에서 스토킹 피해를 발견하였을 때 공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심리적 기능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포감과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³⁴⁾ 스토킹 가해자 역시 단순망상, 애정망상, 관계망상 등 정신병적 특성과 반사회성 인격 장애적 특성 등이 있다고 연구되고 있고,³⁵⁾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여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사사법기관만의 대응으로는 불가능하며 타 기관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경찰, 상담센터, 의료기관 등 복수의 기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에 관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신설하여 명기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국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핵심이 되어왔고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각 기관들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스토킹 행위의 현재화와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범죄에 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강구하기에 앞서 전제가 되는 것이 동 범죄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다. 범죄의 실태·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야 정책방향에 관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0년대 초 몇 개 안되는 논문에서 행해진 실태조

34) 광영길·임유석·송상욱, 앞의 논문, 49쪽.

35) 이창한, 앞의 논문, 104쪽 이하.

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행해지는 조사가 전부이다. 일본의 경우 내각 부남녀공동참획국(內閣府男女共同參畫局)³⁶과 경찰청의 생활안전국생활 안전기획과(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畫課)³⁷에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일본에서 발생하는 스톱킹 사안의 건수, 대응현황 및 피해자·가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스톱킹 행위의 동기, 태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스톱킹 행위와 같이 특수한 성격의 범죄는 그 동기와 가해자·피해자의 특징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톱킹 행위의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스토킹 행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불개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초기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게다가 동 행위는 반복되고 심각화 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 이후에야 형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스톱킹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스톱킹 행위에 관한 대처의 핵심은 “사전적 대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스톱킹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의 확산을 예방

36)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h27/zen_tai/html/honpen/b1_s04_06.html, 2015. 11. 11 검색).

37)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keishicho.metro.tokyo.jp/seian/stoka/jokyo_1.htm, 2015. 11. 11 검색).

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현행의 경범죄처벌법과 같은 안이한 대응은 스토킹 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범죄로 발전된 후 형법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뒤늦은 대응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사후적인 대응이 아닌 스토킹 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전 대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스토킹 행위 규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형사법기관의 스토킹 행위 개입·불개입에 관한 판단 기준의 설정과 개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형사제재 및 보안처분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셋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고 심각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각한 피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반복되고 심각화 되는 특징을 염두에 둔 대책을 강구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싸인을 감지하고 피해 예방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시간·공간상의 제약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스토킹에 대한 개입 기준, 범죄구성요건, 처벌 등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연구 과제로 하도록 하겠다.

◆ 주제어(Key Words) : 스토킹(stalking), 경범죄처벌법(the Minor Offenses Act), 지속적 괴롭힘(constant harassment), 스토킹 행위의 특징(characteristics of stalking), 스토킹 처벌법(Punishment for Stalking Act)

〈논문 접수 : 2015. 11. 15, 심사 개시 : 2015. 11. 17, 게재 확정 : 2015. 12. 23〉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용준, 범죄피해자학, 백산출판사, 2009.

김윤희, 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2008.

이건호·김은경·황지태, 스톱킹 피해실태 및 입법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1.

2. 논문

곽영길·임유석·송상욱,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김성룡, “독일의 스톱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김은경,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김정하, “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9권 제4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김현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이화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 박선영,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박용광, “경찰권의 민사관계불간섭 원칙에 관한 소고-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 박정훈 · 정초영,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경찰공공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01.
- 박찬걸,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5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박철현 · 이상용 · 진수명,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 이성대,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입방안-스토킹행위에 대한 개입방안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4.
-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형사정책연구원, 2013.
- 이창무, “일본과 한국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4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4.
- 이창한, “스토킹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 장규원,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법학연구 제17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장정범 · 이상철,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재난정

- 보학회논문집 제10권 제2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 정완,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정현미, “여성폭력 과년 입법정책의 문제점”,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이화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II. 국외문헌

- 平成26年の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等の対応状況について, 警察廳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畫課, 2015.
- 藤田尚, “ストーカー犯罪の實態と將來の問題—ストーカ規制法成立後の現状と問題点について”, 大學院研究年報 第36号, 中央大學, 2007.

III. 기타

-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2014.
- 법무연수원, 2014 범죄백서, 2014.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1.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2.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3.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4.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2015.
-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3 성폭력 실태조사”, 2014.

< ABSTRACT >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Behavior and Suggestions for countermeasures

Kim Jan-Di

In the past, it was believed that only famous celebrities, athletes, and politicians would be stalked, but now stalking is being considered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at could also happen to ordinary people. Thus, various discussions were made about regulation for and protection from stalking after the late 1990s, only to be disregard. In the meantime, a clause to regulate stalking was made in the Minor Offenses Act in 2013, which made it possible to punish stalkers, though it was minor punishment.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this clause is not only hardly expected to make proper punishment effects but judged to be distant from appropriate regulation for stalking.

In order to suggest coping measures for problematic social phenomena or crimes, it is needed to reduce the range of a criminal behavior and clearly determine its causes and characteristics.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statistics related to stalking victimization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stalking, and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and the difficulties in responding due to such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system of Korea fully reflects such characteristics, and if not, examines what are the

resultant problems of the characteristics. Then it examined the present state of coping measures for stalking and analyzed their effects and problems i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Lastly, it tried to make a suggestion about coping measures for stalking based on the study results.

